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11

발의연월일: 2021. 7. 29.

발 의 자: 김수흥 · 김민철 · 김진표

김철민 • 박성준 • 백혜련

안규백 • 안호영 • 양정숙

윤관석 • 윤준병 • 이상헌

이수진(॥) • 이용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에서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그 적용대상이 단지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였어도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현행 「민법」상 배우자에 관한 법제도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"상속인(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, 이하이 조에서 "상속인"이라 한다)"을 "상속인[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(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,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 한정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상속인"이라 한다]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동거주택 상속공제) ①	제23조의2(동거주택 상속공제) 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	
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	
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	
속주택가액(「소득세법」 제89	
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	
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, 상속	
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	
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	
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	
다)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	
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	
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할 금	
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.	
1. 피상속인과 <u>상속인(직계비속</u>	1 <u>상속인[직계비속</u>
인 경우로 한정하며, 이하 이	및 그 배우자(직계비속이 사망
조에서 "상속인"이라 한다)이	한 경우로 한정하며, 사실상의
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	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
년 이상(상속인이 미성년자인	다)로 한정하며, 이하 이 조에
기간은 제외한다) 계속하여	<u>서 "상속인"이라 한다]</u>
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	
2.・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